

##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

### 1. 신청인 인격사항

① 상호 (법인명)	(주) **건설	② 성명 (대표자)	홍길동
③ 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201-81-9999	④ 전화번호 (휴대폰번호)	(02) 999-9999 (010-999-9999)
⑤ 사업장 (주소)	(국) 111-11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1 전자우편(E-mail) : sky8000@gmail.com		

### 2.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: 뒷면기재

위와 같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합니다.

2012년 2월 1일

신청인 성명(대표자) : (주) \*\*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 : 1.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 
 2.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(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) 1부

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  
 (다만,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.)

위 임 장	대리인				
	위임자 (신청인)	구분	체크상태	설명	대리인 세우사 (서명 또는 인)
(주) **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	⑥ 상호 (법인명)	***세우법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사무사, □ 공인회계사, □ 변호사 ※ 대리인이 법무법인('변호사법' 제89조의 제8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),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	대표인 세우사 (서명 또는 인)
	⑧ 사업자 등록번호	101-99-9999	<input type="checkbox"/>	⑦ 성명 (대표자)	담당 김세우 세우사 (010-777-9000)
	⑩ 사업장	(국) 333-1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 전자우편(E-mail) : sky9000@gmail.com	<input type="checkbox"/>	⑨ 담당자 (연락처)	

첨부서류 : 1.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 
 2.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(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) 1부

- 신청 내용이 「법령사무처리규정」 제23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려 조치됩니다.
-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「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」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공동신청한 경우 공동신청인은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「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(별지 3-2호 서식)」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\*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요청

- 수집·이용 목적 :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
-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
- 보유·이용 기간 : 영구
-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불이익(신청서의 반려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➡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 2.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

## ⑪ 사실관계

○ ~~현지화 갈등~~

## ⑫ 신청내용

'97. 12. 31.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혜택현지법인에 대해 연대보증한 체우를 상기화 갈이 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'08년 중에 대위연체하고 '08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

- 적의1) 대위연체액을 업무우관 가지금급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계상액이 봉상입되는지 여부
- 적의2) 만약, 상기 사실관계와 특정 현지법인에 대한 대위연체액이 업무우관 가지금급 해당시 소득처분 방법과 소멸시효 완성시 손금상입 가능 여부

## ⑬ 관련법령

법인세법 제34조, 구 법인세법 제14조, 동 시행령 제53조 및 제61~62조

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

## ⑭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, 판례 등

- 제법연-118(2007. 2. 22.), 제법연-106(2004. 2. 13.), 법인46012-1282(2000. 5. 31.),  
서면2년-115(2006. 6. 15) etc
- 국신 2005서436(2006. 3. 10.)

## ⑮ 신청인의 의견

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체우 대위연체액을 인의연체로 보아 대손처리가 봉가하다는 유권 해석과 그 반대의 해석이 있어 사례액으로 명확한 사전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.

※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 사 실 관 계

1.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('97.12.31이전)한 후 해외지역의 외환위기와 환율급등에 따른 사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현지법인의 채무상환 능력상실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, 당해 피보증회사의 기업개선 작업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해외사업 중단 요구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 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'08.6월 대위변제하였음

### ○ 현지법인 차입금 지급보증 현황

구 분	현지법인 A	현지법인 B
대출(보증)일	'96.07.25.	'97.03.15.
대출은행	수출입은행외	장기신용은행외
대출금액(백만\$)	50	30
연대보증	당사	당사 및 계열사

### ○ 대위변제 및 대손처리 현황

구 분	현지법인 A	현지법인 B
변제일자	'08.6.30	'08.7.31
대위변제액	00000	00000
대손처리예정일	'08.12.31	'08.12.31
대손처리액	00000	00000

### ○ 지급보증 원인

-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은 지급보증 당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보유하지 아니하고, 신용도가 Local side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관련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요구로 모기업인 당사가 지급보증

### ○ 대위변제 사유

- '00년 ××國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인접국의 폐소화·루피아화의 평가절하는 진출국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연결되어 현지법인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'97년말 진행중이던 공사가 전면 중단상태가 되었고,
- 그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불안한 현지국의 정치·경제 상황하에서 자산매각이 어렵게 되고,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, 계속 증가하는 현지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지급능력도 상실하여
-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해외현지법인 보증채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게 됨

##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

## 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 상 호 (법인명)	(주)스스건설	② 성 명 (대표자)	홍 길 동	③ 사업자(주민) 등록 번호	102-8**-*****
④ 사업장 (주 소)	(우)110-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	⑤ 전화 번호 (휴대전화)	(02)700-8000 010-700-8000		

다음 검토항목은 신청인 및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항목으로 체크란의 “아니오”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## 2.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인 및 신청내용 검토

항 목	체크란(✓)	
	예	아니오
· 신청인의 사업 또는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신청대상 거래가 이미 개시되었거나,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법정신고기한(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,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일)이 경과하지 않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신청인의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및 적용과 관련 있는 질의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또는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없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님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일련의 조합된 거래의 일부만 신청한 것이 아님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·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2011년 12월 15일

신청인 : (주)스스건설

대표이사 홍 길 동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##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

신청인	① 상호 (법인명)	(주) **건설	② 성명 (대표자)	총 직종
	③ 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201-81-99999	④ 전화번호 (휴대번호)	(02) 999-9999 (010-999-9999)
	⑤ 사업장 (주소)	(031) 111-111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1 전자우편(E-mail) : sky8000@gmail.com		

### 신청 내용

⑥ 답변통지를 받은 날	2012년 1월 31일	⑦ 문서번호 (문서발송담당)	법률 - 1***** (이세상)
⑧ 공개연기 신청 사유	1001(양해각서) 체결상태로 영업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		
⑨ 공개연기 신청 기간	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(12) 개월		

위와 같은 사유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에 대한 공개연기를 신청합니다.

2012년 2월 1일

신청인 성명(대표자) : (주) \*\*건설 대표이사 총 직종 (서명 또는 인)  
국세청장 귀하

아래 사람에게 위 공개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				
대리인				
위임장 (신청인)	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세무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회계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변호사 <small>* 대리인이 법무법인(변호사법 제89조의제8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),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</small>		
	(주) **건설 대표이사 총 직종 (서명 또는 인)	⑥ 상호 (법인명)	***세우업인	⑦ 성명 (대표자)
		⑧ 사업자 등록번호	101-99-99999	⑨ 담당자 (연락처)
	⑩ 사업장	(0333-111)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 전자우편(E-mail) : sky9000@gmail.com		

※ 공개연기신청은 「법령사무처리규정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신청 가능합니다.

### \*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요청

- 수집·이용 목적 :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
-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
- 보유·이용 기간 : 영구
-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불이익(신청서의 반려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☞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

신청인	① 상호 (법인명)	(주) **건설	② 성명 (대표자)	총직통
	③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	201-81-99999	④ 전화번호 (휴대번호)	(02) 999-9999 (010-999-9999)
	⑤ 사업장 (주소)	(02) 111-11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1 전자우편(E-mail) : sky8000@gmail.com		
대리인	⑥ 상호 (법인명)	***세우법인	⑦ 성명 (대표자)	대표 인세우 세우사
	⑧ 사업자 등록번호	101-99-99999	⑨ 담당자 (연락처)	담당 김세우 세우사 (010-777-9000)
	⑩ 사업장	(02) 333-1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 전자우편(E-mail) : sky9000@gmail.com		

신속한 처리 신청 사유 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)

○ **역할로 작성**

위와 같은 사업상 긴급한 사정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.

2012년 2월 1일

신청인 성명(대표자) : (주) \*\*건설 대표이사 총직통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성명(대표자) : \*\*\*세우법인 대표 인세우 세우사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 : 1.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 1부

1.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「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(별지 3호 서식)」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**2. 신속한 처리 신청 사유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**

- 통제불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
-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
- 사업상 긴급한 사정(격대적 기업인수 등)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

**3. 다음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**

-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
-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
-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

**\*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요청**

- 수집·이용 목적 :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
  -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
  - 보유·이용 기간 : 영구
  -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불이익(신청서의 반려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☞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